

■ 법률 칼럼

최근 이민 소식

1. 6월 영주권 문호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승인 가능일만 5개월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I-130 접수일(우선일자)가 2021년 11월15일 또는 그 이전인 경우는 심사가 끝난 경우 영주권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가능일은 동결 상태로 지난달과 같이 2023년 9월 1일입니다. I-130 접수일자가 2023년 9월1일 또는 그 이전인 경우만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전 순위의 경우도 5월같이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동결되어 5월과 같습니다.

2.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건강 검진 서류의 유효 기간 변경

2024년 4월4일 USCIS(이민국)는 영주권 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 검진서의 유효 기간에 대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변경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 검진 시에 건강 검진 담당의가 이민국 검진 양식(Form I-693)에 2023년 11월1일 또는 그 이후에 서명을 하신 경우 그 검진 양식은 유효 기간 제한이 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2) 건강 검진 시에 건강 검진 담당의가 이민국 검진 양식에 2023년 11월1일 이전에 서명을 하신 경우 그 검진 양식은 유효기간이 서명일로부터 2년입니다.

3) 만약 이민국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유효기간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로 새로운 검

진서를 이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변경 사항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국시 deferred inspection(사후입국심사) 증가

최근 들어 영주권자들이 입국 시에 과거의 이민상의 문제 - 서류 위조, 이민 사기 - 때문에 영주권자로 입국 시에 영주권과 여권을 압수당하고 입국 후에 사후 입국 심사를 이민세관 단속반(ICE)에서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사후 입국 심사에 걸리는 경우의 압도적 이유는 I-94(출입국 기록) 위조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과거의 출입국 관리 기록이 최근에 모두 전산화되어 이민심사관이 입국 심사 시에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 결과 입국 심사에 과거의 위조가 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 입국 심사에 걸리신 분들은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가 요망됩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지간신경종(Neuroma)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가 찢어찢어 저리고 무뎠던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발가락을 부딪히거나 빠지도 않았고 특별히 다친 기억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아픈가요?”

대개 발가락 부분의 통증과 이상감각으로 내원한 환자들은 주로 Tingling 또는 Numbness sensation 즉, 찢어지고 저린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는 주로 중년의 여성이나 당뇨병자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지간신경종(Neuroma)이라는 병증 때문이다. 지간신경종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pinched Nerve 즉 압축 신경, 눌린 신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간신경종은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정확히 짚어 설명하지 못하고 앞발 부분 또는 발바닥 부분이 저리고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을 정도로 정확히 자각하기 힘든 질환이기도 하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 중 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발병하는데 이는 그 부위 좁은 통로에 주요한 신경들이 지나면서 소위 “신경의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병목현상 때문에 그 부위의 신경이 압력을 받거나 염증이 생겨 신경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이 아닌 다른 발가락 사이에 같은 지간신경종이 다양한 이유로 발병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병증을 의심해 봐야 하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지간신경종이 의심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료를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고 그 원인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진단은 주로 의사의 촉진과 문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확진이 필요할 때는 족석에서 간단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거나 MRI를 사용하기도 한다. 대개는 환자의 발가락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커진 신경종이 발견되지만 일반 크기의 신경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는 비교적 간단한 처방으로 시작된다. 우선 신발 앞쪽의 폭이 좁은 신발과 하이힐의 착용을 지양하며 올바른 신발을 고르는 방

법을 설명하고 추천하게 된다. 그리고 발의 앞꿈치 밑부분에 패드를 대준다. 이를 Metatarsal Pad라고 부르는데 걸을 때 디딤발 밑의 앞꿈치 바로 뒷부분을 지지하여 발가락 사이가 좁혀지지 않고 간격을 벌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패드는 흔히 약국 등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정확한 위치에 부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정확한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패드와 함께 Foot Orthotics(의학용 교정 깔창)을 동시에 처방하기도 하는데 Metatarsal pads를 의학용 교정 깔창의 정확한 부분에 영구적으로 넣는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패드의 부착으로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신경종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 소염제를 처방하거나 신경종에 직접 소염제를 주사한다. 먹는 약과 주사를 피하고 싶은 환자들이 많아서 ESWT(체외충격파)를 시행하기도 한다.

위의 치료법으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수술을 하기도 한다. 비정상적으로 커진 신경종 부위를 절단하고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인데, 간혹 수술 후에도 불편한 감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어 요즘에는 수술 마지막 단계에 절단한 부분 신경의 말초 부위를 발 밑 근육조직에 심어 이들 신경말초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하여 수술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도 한다.

지난 몇 차례 칼럼에서도 강조했듯이 최고의 예방은 올바른 신발의 착용과 선택이다. 하이힐을 신을 때는 가능하면 신발 앞부분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 앞이 뾰족하지 않은 구두를 선택하며 너무 조이는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장원호 발전문병원
Ryan Chang, DPM
(949) 484-4405
62 Corporate Park #235
Irvine, CA 92606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교통사고, 각종상해 전문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교통사고/각종상해 Slip & Fall/Dog Bite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